

광역의회 교섭단체의 의의와 과제

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 **고 경 훈**

교섭단체의 의의와 현황

- 교섭단체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의회 규칙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원내 정파를 말함
- 즉, 교섭단체는 동일한 정당소속의 의원 또는 동일한 정치적 이념과 목표를 지향하는 의원들로 구성되는 의회 내 정치단체를 말함
 - 교섭단체는 동일 정당 혹은 동일 정파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하고 통일시켜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
 - 교섭단체를 통해서 각 의회는 의회운영에 있어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일정한 정파에 속하는 의원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종합·조정하여 정당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

광역의회 교섭단체의 과제

- 현행의 광역지방의회 자치법규(조례 및 규칙)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상 교섭단체라는 것의 의미가 다수당에 해당하는 원내정당 수준에 머물러 있음
 - 따라서 광역지방의회의 의사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정파 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1당 체제의 교섭단체 운영이 아닌 다수의 교섭단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요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전체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간 논의가 필요
- 교섭단체 관련 제도적 기반을 파악해 본 결과 국회 교섭단체의 경우 국회법 제34조(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) 조항을 통해 인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, 정치자금법 제27조(보조금의 배분) 조항을 통해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반면에 광역지방의회의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위법의 근거 마련이 부재
-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가 효율적으로 구성·운영되기 위해서는 상위법(지방자치법) 개정을 통해 구성·운영의 근거를 규정한 후, 광역지방의회별로 자체적인 법규의 제·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
 - 상위법 부재로 인해 광역지방의회의 교섭단체는 형식적인 구성·운영의 내용만 규정할 뿐 그 외 교섭단체의 권한 및 역할, 지원 등의 내용은 공식적인 규정 마련이 어려운 실정

-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경우 권한과 역할의 근거가 자치법규 내에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광역지방의회별로 권한과 역할의 범위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남
-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경우, 인적 지원은 타 부서 소속의 직원을 비공식적으로 지원받는 제한적이고 비공식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, 재정적 지원의 경우, 지원이 가능한 규정이 어느 곳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

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 방안

- 첫째,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로 상위법 상의 교섭단체 구성·운영 등 제도 기반 마련이 필수적
- 둘째,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근거가 어디에도 없어 예산편성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'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' 개정 필요
- 셋째, 교섭단체 관련 제도 기반 마련은 단순 규정 명시가 아닌 교섭단체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할 것임
 - 교섭단체 관련 세부 규정에 대한 내용들은 ① 교섭단체 법제화시 '교섭단체'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 필요, ②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대한 최소 의원수(혹은 비율) 등의 원칙적 기준 마련, ③ 교섭단체 권한 및 기능 증대를 위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의장과의 직무협약 규정 마련, ④ 자치법규 상 통일된 형식으로서의 교섭단체 규정 등이 있음

내용문의 고 경 훈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, kukkh@krila.re.kr)